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3352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주은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D(E생)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12. 3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D(E생)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11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법원행정처, F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E생)은 2016. 10. 25.자 대출에 기해 원고에게 13,997,807원 및 지연이자 채무가 있었던 사실, G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1993. 1. 5.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B가 위 부동산 중 3/11 지분을, 직계비속인 원고와 피고 C 등이 위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을 각 공동상속한 사실, G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가 7/10 지분을, 피고 C이 3/10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실, 당시 D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있었고 달리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2020. 1. 15.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G로부터 피고 B 앞으로 7/10 지분의, 피고 C 앞으로 3/10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원고가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의 위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 1) 피고들은 수시로 D에게 식당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 2) D은 위 식당을 폐업한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 3) 이후, 피고 C은 D이 피고 B를 돌보는 조건으로 D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어 피고 B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4)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위와 같은 대여금, 치료비,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금액이 위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 가액을 초과한다.
- 5) D은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들도 그 의사를 알지 못했다.

나. 판단

-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게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D을 금전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2)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들은 D이 변제자력이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결과로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들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3)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D의 지분(2/11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D에게, 피고 B는 위 부동산 중 14/110 지분($2/11 \times 7/10$)에 관하여, 피고 C은 위 부동산 중 6/110 지분($2/11 \times 3/10$)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

부동산 목록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 241㎡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표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139.69㎡, 2층 124.17㎡, 지하 70.56㎡ 끝.

